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2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06. 9. 8.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공직선거법」 제23조 및 「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」 개정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현재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, 2006년 4월 28일자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“윤리특별위원회”와 기존에 명시된 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의 명칭 및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행정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정수를 11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조정함
(안 제2조)
- 나. “윤리특별위원회”를 새로이 신설하여 의원의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함(안 제8조제3항)
- 다.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11인에서 9인으로 조정(안 제8조제5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50조·제50조의2·제71조·제79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: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,
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의회내에”를 “의회 내에”로, “위원정수”를 “위원 정수”로 하고, 동조 제1호 중 “9인이내”를 “9인 이내”로, 동조 제2호 중 “11인이내”를 “9인 이내”로, 동조 제3호 중 “11인이내”를 “9인 이내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 위원회를 둔다.”를 “의회는 의원의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”로 하고, 동조 제5항 중 “11”을 “9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【목적】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</u>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【목적】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</u>----- -----.</p>
<p>제2조 【상임위원회의 설치】 의회내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<u>위원정수</u>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운영위원회 <u>9인</u>이내 2. 행정위원회 <u>11인</u>이내 3. 사회건설위원회 <u>11인</u>이내 	<p>제2조 【상임위원회의 설치】 의회 내에 ----- ----- 그 <u>위원 정수</u>는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<u>9인</u> 이내 2. ----- <u>9인</u> 이내 3. ----- <u>9인</u> 이내
<p>제8조 【특별위원회】 ①(생략) ②(생략) ③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.</p>	<p>제8조 【특별위원회】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의회는 의원의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</p>
<p>④(생략) ⑤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1인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④(현행과 같음) ⑤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을 초과할 수 없다.</p>